

駐車場法

1979년 4월 17일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고재일

第1章 總則

第1條(目的)이 法은 都市에 있어서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都市내 自動車交通의 圓滑을 기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하고 都市機能의 維持 및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路上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하여 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의 일정한 區域에 設置하는 施設로서 一般의 用에 供하는 것을 말한다.
2. “路外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하여 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 이외의 場所에 設置하는 施設로서 一般의 用에 供하는 것을 말한다.
3.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4.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중 2輪車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第2章 駐車場整備計劃等

第3條(駐車場整備地區)建設部長官은 道路의 效率을 높이고 圓滑한 自動車交通의 穩保를 위하여 都心商業地域 또는 그 周邊地域안의 駐車需要가 顯著하게 높거나 自動車交通의 輻輳로 인하여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區域을 市長(서울 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의 申請에 의하여 都市計劃으로써 駐車場整備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第4條(駐車場整備計劃의 立案)
① 市長 또는 郡守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整備地區가 指定된 때에는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에 대한 都市計劃(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그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이 있은 날로부터 2年내(決定된 整備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立案하여 決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는 路上駐車場設置計劃과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路上駐車場의 設置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은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需要를 漸次的으로 路外駐車場으로 轉當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整備計劃을 立案함에 있어서는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에 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調査하여 이를 整備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1. 土地利用現況
2. 自動車交通發生量과 集中量
3. 駐車需要의 長期豫測

⑤ 路上駐車場設置計劃은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需要와 路外駐車場의 駐車能力을 甚案하여 道路交通의 混雜을 招來하지 아니하도록 最少限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1. 路外駐車場의 位置 및 面積
2. 路外駐車場의 形態(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 는 建蔽率·容積率 및 높이)
3. 駐車場의 概略的인 誘致圈 및 駐車臺數

第5條(駐車場整備地區이외의 地域의 駐車場設置計劃) 駐車場整備地區이외의 都市計劃區域내에 駐車場을 設置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都市計劃으로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6條(駐車場設置計劃의 基準등)
① 第4條第2項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設置計劃 및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의 基準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② 市長 또는 郡守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申請을 하거나 第4條第2項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設置計劃 또는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을 立案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의 意見를 들어야 한다.

第3章 路上駐車場

第7條(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廃止)
① 路上駐車場은 당해 駐車場이 位置하는 都市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路上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이를 設置한다.

② 市長 또는 郡守는 路上駐車場의 存置가 필요없게 되거나 第4條第1項의 整備計劃에 따라 路上駐車場에 代替되는 路外駐車場이 設置된 때에는 치체없이 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

第8條(路上駐車場의 管理) ① 路上駐車場의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駐車場을 設置한 市長 또는 郡守가 管理한다.

② 路上駐車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9條(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等)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 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 路上駐車場管理者는 정당한 理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駐車料金과 同一額의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

④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0條(路上駐車場의 供用制限等) ① 市場 또는 郡守는 交通이 混雜하거나 混雜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緊迫한 事態가 발생한 경우에는 一定한 期間 또는 時間을 정하여 路上駐車場의 全部에 대한 供用을 制限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의 供用을 制限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公告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第11條(路上駐車場의 標識) 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駐車場標識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이 외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章 路外駐車場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 ① 路外駐車場은 당해 駐車場이 位置하는 都市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이를 設置한다.

② 市長 또는 郡守이 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計劃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路外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③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은 建築法 기타 다른 法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路外駐車場의 管理) 路外駐車場은 第1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管理한다.

第14條(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等)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基準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管理方法) ① 市長 또는 郡守가 管理하는 路外駐車場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 市場 또는 郡守이 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가 駐車場의 供用을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駐車料金과 駐車場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管理規程으로 정하여 미리 市長 또는 郡守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6條(中止등의 申告) 市長 또는 郡守이 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가 駐車場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供用을 中止하거나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7條(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等) 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 또는 管理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絕할 수 없다.

③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の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8條(路外駐車場의 標識) 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利用者的 意見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建築物附設駐車場

第19條(駐車場의 附設)① 都市計劃區域 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建築物에 附帶되는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建築物의 用途別規模 및 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特定建築物로 인하여 駐車需要가 顯著히 增加되거나 增加될 것이豫想되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設置基準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따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建築物 또는 隣近에 駐車場을 設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6章 補則

第20條(國·公有財產의 處分制限)① 国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 管理行政廳은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積極協助하여야 한다.

②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道路·廣場 및 公園등의 地下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 당해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관하여 都市計劃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都市計劃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許可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 및 公園法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路外駐車場의 敷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21條(補助 또는 融資)① 国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駐車場整備地區 안에서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관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国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아 駐車場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

第22條(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市長 또는 郡守가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駐車料金등은 駐車場과 交通安全施設의 設置·管理 및 運營 이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23條(監督)① 建設部長官은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 또는 郡守는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에게 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使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駐車場이 公益上 현저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24條(法令違反등에 대한 處分)① 市長 또는 郡守이 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 또는 郡守는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나 營業의 中止를 명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違反한 때
2.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工事を 한 때

② 帳場 또는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 또는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路外駐車場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路外駐車場管理者가 정당한 事由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보고 및 檢查)①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駐車場 또는 그 業務와 관계 있는 場所에서 駐車場의 施設 또는 業務에 관한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第26條(權利義務의 移轉)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承認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移轉할 수 있다.

第27條(都市計劃區域외에 있어서의 準用)都市計劃區域이 외의 地域에서의 路外駐車場의 設置·管理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一部를 準用할 수 있다.

第28條(施行令)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則

第29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의 供用을 開始한 者

第30條(同前)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管理規程에 정한 金額 이상의 駐車料金을 받은 者
2. 第24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市長 또는 郡守의 命令에 違反한 者

第31條(同前)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의 规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의 供用의 中止 또는 廢止를 한 者
2. 第17條第2項의 规定에 違反하여 路外駐車場의 이용을 拒絶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4. 第25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檢查를 拒否·忌避 또는 妨害한 者

第32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

에 관하여 第29條 내지 第31條의 规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附則 第4項의 规定은 第19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制定·施行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이 法 施行 당시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施設로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駐車場 으로 본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第15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路外駐車場管理者는 당해 路外駐車場을 이 法施行日로부터 1년내에 第12條第3項의 规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都市計劃法의 改正)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1. 駐車場整備地區：駐車場法第3條의 规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④(建築法의 改正) 建築法中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22條의 2를 削除한다.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规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 으로 한다.
3. 第55條第2號 중 “第22條의 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新刊

研究施設

設計・建築・設備資料集成

Chemische und
biologische Laboratorien

Planung Bau Einrichtung

Werner Schramm著
監訳
工学博士 山崎三郎
工学博士 井上宇市
工学博士 番匠吉衛

本書는一般的인 설계원리의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실험실 및 실험시설의 차수와 배치를 논의하고 실험실 규모의 기준을 설정해 부지와 건축의 기본자료를 구상하는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위에 건축의 세부적인 배치 및 에너지공급 방법, 설비시설의 배치, 나이가서는 실험기기의 설치 및 사용을 고려한 설비량의 결정, 필요한 부속실, 동물실, 실험온실의 설치까지 검토되어 있습니다.